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
[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6. 2003누23143]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(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)

【피고, 항소인】 법무부장관

【제1심판결】서울행정법원 2000. 11. 3. 선고 99구26517 판결

【변론종결】2004. 10. 8.

【주문】

-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2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피고가 1999. 8. 18.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.2.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피고가 1999. 8. 18.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.2.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피고가 1999. 8. 18.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.2.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피고가 1999. 8. 18.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.2.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이유]

11. 처분의 경위

[이유]

11. 처분의 경위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